

이정원 CPA 월간 뉴스레터

06.2018 MONTHLY NEWSLETTER

2018년 6월호 (2018-6)

CONTENTS

a. 인사말

b. 세무정보

- [세금보고 및 기록을 얼마동안 보관을 해야 하나요?](#)
- [IRS 감사 절차?](#)

c. 책 소개

d. 광고

인사말

안녕하세요? 이정원 회계사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오래간만에 인사 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세금보고 시즌으로 인해 뉴스레터를 발행을 못 해 죄송합니다. 다시금 세무정보 및 사업을 운영 하신데 중요한 사항들을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원 CPA 드림

< 세무정보 >

세금보고 및 기록을 얼마동안 보관을 해야 하나요?

세금 감사란 세금보고에 기입된 내용들을 영수증과 인보이스, 증빙 서류를 대조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매입뿐 아니라 매출에 대한 기록도 잘 보관 해 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RS 가 세무감사를 실시 할수 있는 법적 시효는 실제 세금보고를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고 본래 신고 마감일 보다 이전에 세금보고를 했다면 3년후 4월 15일이 됩니다. 예로 2017년도 세금보고서를 2018년 3월 31일에 했다면 2021년 4월 15일 까지 세금보고서 상에 보고된 소득 및 지출 경비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 시효가 다음과 같은 경우 6년이나 그 이상으로 늘어나 6년정도 세무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가 전세소득의 25% 이상 축소 보고를 할 경우: 이 경우 세무감사를 실시 할수 있는 법적 시효는 3년에서 6년으로 늘어 납니다. 법적 시효는 6년 으로 늘어 나지만 실제로는 해당 감사 년도에 앞뒤로 한해씩 추가 세무감사를 실시 합니다. 예로 2016년도 세금 보고서를 세무감사 결과 25% 이상을 누락 되었다고 판단 했다면 2015년과 2017년도 세금 보고서를 감사 하는것으로 종료를 합니다.

법망을 피할 목적으로 세무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 한 경우 세무 감사를 실시 할수 있는 법적 시효는 무기한입니다.

10년이 지난 세금보고서라도 허위로 보고를 되었을 경우 언제든지 감사를 실시 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3년이지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6년치의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IRS 감사 통계 및 절차?

IRS 는 세금보고 내용이 정확하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보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합니다. 심사대상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납세자가 오류를 범했거나 정직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2016 년 기준 총 1.1 Million 세금보고가 감사 대상이 되었으며 총 세금보고의 평균 0.5% 의 숫자 입니다. 하지만 이건 평균 수치 이며 보고된 FORM 과 소득에 따라 5.2% 까지 올라 갈수 있습니다.

IRS 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사 대상을 선별 합니다.

1. 부당 탈세 거래 및 IRS 가 획득한 정보를 통해 선택이 됩니다. 예로 내부 고발자를 통해 증빙을 있을 경우 감사 대상에 선택이 됩니다.
2. 컴퓨터 프로그램은 각 신고서에 대한 "점수" 를 부여 합니다. 과거 유사한 신고서에 대한 IRS 의 경험을 바탕으로 탈세 가능성을 대한 평점을 매깁니다. 예로 자영업자 는 SCHEDULE C 를 통해 보고를 할 경우 근로소득만 보고하는 사람보다 감사대상에 선택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무보고의 소득이 IRS 에 신고된 내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4.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그리고 거래처 등으로 연루 되어 있는 경우 심사대상으로 선택 될수 있습니다.

세무 감사는 3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1) 서신 감사 (Correspondence Audit): 우편을 통해 감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간단하고 짧고 가장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2017 년 기준 총 감사의 70.8% 가 서신감사를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 2) 사무실 감사 (Office Audit): 서면 감사보다 좀 더 복잡한 감사로 주로 1 개 이상의 사항이나 1 개년도 이상의 세금보고 가 될 수 있습니다.
- 3) 실지 감사 (Field Audit): 감사중 제일 복잡한 감사로 경험 많은 감사원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세금보고에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 장부 기록등으 검토 합니다.

부양가족 세금공제

세법에서의 부양가족은 자녀 또는 친척으로 구분되며 이 구분에 따른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여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자녀로서 부양가족이 해당 되려면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자녀는 납세자의 자식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의 자식들인 조카들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는 19 세 미만이어야 하며 풀타임으로 대학을 다닌다면 24 세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 납세자는 자녀의 생활비의 반 이상을 도와주어야 하며 년중 6 개월 이상을 함께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 학교, 군대, 병원 등으로 떨어져 있는 기간은 예외로 이기간 동안은 함께 거주한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부모님이나 성인자녀는 친척으로서 부양가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득이 \$ 4,050 미만이며 일년동안 함께 거주 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양가족에 해당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2018 년부터 트럼프 세제 계편을 통해 인적공제가 없어지지만 부모님과 같이 거주 할 경우 Refundable Credit 및 부양가족을 통해 세율이 정해 지므로 정확한 부양가족 판단이 필요 합니다.

< 책 소개 >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습관을 바꿔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찍이 서기 전 300년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반복해 하는 행위의 모습이다. 탁월함이라 단일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에 의하 만들어 진다고 했다. “1%의 원리” 라는 책은 1% 씩 습관을 바꿔나가면 인생에 커다란 차이를 가져온다는 원리를 담고 있다. 아주 작은 변화들이 성공 가능성을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내용이다.

하루 24시간의 1% 인 14 분동안만 어떤 1%를 바꿔야 할지 생각할 것을 권합니다. 예로 현재 하는 일의 좋은 점 3 가지를 꼽아본다. 그리고 10 년후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적어본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하나를 정한다. 지난 12 개월동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갖는다. 성공과 실패를 가려본다. 사소한 일에 격하지

말고 무시하는 법을 배워라. 작은 것에도 웃고, 실수와 실패도 즐기는 법을 배워라.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찾아 헤메게 하고 단하게 한다. 목표를 향해 다음의 1% 를 내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인생은 자동차 핸들과 같아서 살짝만 움직여도 방향이 완전히 바뀐다. 오늘 하루 14 분 동안 사업체 성공과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6 월의 중요한 Date

날짜	회계 법인 업무	고객에 요청사항 및 노트
6/15/18 (금)	5 월 달 Payroll Tax 납부	5 월달 은행 Statement 를 5/11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20/18 (수)	5 월달 Sales Tax & COAM 계산 및 납부	5 월달 세일즈 정보 혹은 은행 Statement 를 5/16 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30/18 (토)	Tobacco License Renew 마감	담배를 판매를 하시는 업체이면 주정부에 Tobacco license 를 6/30 일 까지 Renew 를 하셔야 합니다.

광고

1. 6 월 한달 동안 고객 방문의 달로 정했습니다. 혹시 사업체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고 싶으신 고객들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원 CPA
JDI 회계법인

678.725.5858

Fax: 678-666-1212
Email: info@icpaplus.com

www.icpaplus.com

2550 Pleasant Hill Rd Suite 439
Duluth, GA 30096
(동무스 H 마트 2층 439호)